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엠씨파트너스

2. 조치일 : 2026. 7. 29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금융회사 지분 취득 시 관계 법령상 의무 검토 철저

업무집행사원은 법령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하지만 ㈜엠씨파트너스(업무집행사원, 이하 '회사')는 카니예 사모투자합자회사(이하 '카니예 PEF')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카니예 PE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, 카니예 유한회사(이하 '카니예 SPC', 최대주주: PEF 100%)가 A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 이상을 취득하고, 이후 카니예 PEF의 사원이 변동하여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, 카니예 SPC가 위 각 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*

* 카니예 SPC는 ① A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%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(지분율 6.19%)하게 된 사실에 대해 지연보고하였고(사유발생일 : '21.7.10., 보고기한 : '21.7.16., 보고일 : '22.4.28.), ② 포어러너캐피탈파트너스㈜가 카니예 PEF의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추가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행법상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함†(사유발생일 : '21.7.29., 보고기한 : '21.8.5.)

† 다만, ①의 지연 보고 시('22.4.28.), 사원 변경에 대한 내용도 주석으로 함께 기재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, 회사는 향후 금융회사 주식 취득 시 은행법 등 관계 법령상 승인·보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법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, 지분 취득 이후에도 변동 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.